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3. 12. 6.
行政財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: 1993年 11月 22日 區廳長提出
- 나. 回附日字: 1993年 11月 24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: 第22回 永登浦區議會(定期會) 第2次 委員會(1993年 12月 6日) 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總務局長 尹鼎重)

가. 提案理由

- 불합리한 동경계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
-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및 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

나. 主要骨子

- 신길제5동장 관할구역중 대방천 복개도로를 중심으로하여 서쪽에 위치한 대림동 669번지~681번지를 대림제3동장 관할로 함.
-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영등포 제2동사무소 소재지를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3번지 9호로 변경
-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영등포 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영등포동7가 57번지 7, 59번지 2, 4호로 변경
- 신길제5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영등포구 신길동 422번지로 변경

3.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姜性熙)

- 가. 신길 제5동사무소 管轄區域 중에는 대림동 669번지~681번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行政洞과 法定洞의 不一致로 轉出入時 住民登錄카드가 신길 제5동으로 갈 것이 대림 제3동으로 移送되어 民願處理가 遲延되는 사례가 허다할 뿐아니라 中·高等學校學群과 稅務署 管轄의 混亂 및 管轄 警察署의

境界 모호 등 住民生活의 不便을 야기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대림동 669번지~681번지 를 대림 제3동으로 管轄 變更하고자 하며 나. 土地分割에 따라 地番 變更된 永登浦 第2洞事務所와 永登浦 第3洞事務所 所在地 地番은 變更된 地番으로 바꾸고 신길 제5동 사무소 소재지 지번(440~57)은 移轉된 所在地 地番(422地番)으로 變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地方自治法 第4條 第5項의 規定에 依據 本 件 改正案은 要請案대로 改正함이 可하다고 思料됨.

4. 審查結果: 원안가결

신·구 조문대조표

(제3회)		동사부소 명 청	동사부소 명 청	법 청 동 관 합	일 부 지 역 관 합	(개정안)	
부	부	부	부	부	부	부	
신 지 지	영동포부 신길동	신길동 중 신길로 이서지역의 신 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330 의 13, 14호와 331, 329의 22, 28, 29, 30, 32, 33호, 336, 342의 48호 도로를 경유 342의 353, 355의 39 호, 379의 7호, 대림동 672~681 번지에 연하는 이남지역	신 길 동	영동포구 신길동	영동포구 신길동	신길동 중 신길로 이서지역의 신 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330 의 13, 14호와 331, 329의 22, 28, 29, 30, 32, 33호, 336, 342의 48호 도로를 경유 342의 353, 355의 39 호, 379의 7호, 대림동 672~681 번지에 연하는 이남지역	신길동 중 신길로 이서지역의 신 길동 337의 256호를 기점으로 330 의 13, 14호와 331, 329의 22, 28, 29, 30, 32, 33호, 336, 342의 48호 도로를 경유 342의 353, 355의 39호, 379의 7호, 대림동 672~681번지에 연하는 이남지역 중 대림동을 제외한 지역 대림동 대림제1, 2동장 관할 구 역을 제외한 전지역
영 동 포 구 부	영동포부 대림동 3동 4호	대 림 동 3 동 4 호	영동포부 영동포2가 18번지18호	영 동 포 부	영동포부 영동포2가 영동포3가 영동포4가 영동포5가 영동포6가	영동포부 영동포2가 영동포3가 영동포4가 영동포5가 영동포6가	영동포1가 영동포2가 영동포3가 영동포4가 영동포5가 영동포6가
영 동 포 부	영동포부 영동포2 3동 59번지	영 동 포 부	영동포1가 영동포2가 영동포3가 영동포4가 영동포5가 영동포6가	영 동 포 부	영동포부 영동포2가 영동포3가 영동포4가 영동포5가 영동포6가	영동포1가 영동포2가 영동포3가 영동포4가 영동포5가 영동포6가	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별표4>중 일부지역 관할란과, 동사무소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신길제5동의 일부지역 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부지역관할
신길동 중 신길로 이서지역의 신길동 337의 256를 기점으로 330의 13, 14호와 331, 329의 22, 28, 29, 30, 32, 33호, 336, 342의 48호 도로를 경유 342의 353, 355의 39호, 379의 7호, 대림동 672~681번지에 연하는 이남지역중 대림동을 제외한 지역

- 대림제3동의 일부지역 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부지역관할
대림동 중 대림제1, 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

- 영등포제2동 동사무소 소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3번지 9호
- 영등포제3동 동사무소 소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7호, 59번지 2, 4호
- 신길제5동사무소 소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영등포구 신길동 422번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1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불합리한 동경계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
-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및 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

2. 주요골자

- 신길제5동장 관할구역중 대방천 복개도로를 중심으로하여 서쪽에 위치한 대림동 669번지~681번지를 대림제3동장 관할로 함.
-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영등포제2동사무소 소재지를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3번지 9호로 변경
-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영등포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번지 7호, 59번지 2, 4호로 변경
- 신길제5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영등포구 신길동 422번지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조 5항
지방자치법 제6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
-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